

#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340번
- 제출자 : 서울특별시
- 제출일 : 2021년 4월 2일
- 회부일 : 2021년 4월 6일

### 2. 제안이유

- 가.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청소년 특화시설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나. 문화예술 청소년 분야에 두루 걸친 전문적인 지식과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다양한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다. 신규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에서 적정으로 결정되어 2022.1.1.부터 2024.12.31.까지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함.

### 3.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제18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특정 목적의 청소년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특화시설’로 음악예술과 청소년 분야에 두루 걸친 전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며, 전문 음향설비 관리 등 특수 기술 인력이 요구됨.
-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교육정책,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과 지역 사회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음악예술 및 청소년 정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 맞춤형 음악 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보급
- 청소년의 창작 활동 및 관련 분야 직업체험활동 지원
- 문화예술 연계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연구
- 대안적 삶과 진로 탐색을 위한 대안교육과정 운영
-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의 시설 안전관리
- 그 밖에 시립양천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90-6 외 4필지

- 시설규모 : 대지면적 1,936㎡, 건물연면적 5,422㎡(지하 1, 지상 6)
- 주요시설 : 공연장, 강의실, 음악·공연·댄스 등 분야별 연습실, 합주실, 라운지, 음악카페, 창작공간 및 사무공간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지역주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2022.1.1. ~ 2024.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2.6월 개관(예정) 기준(운영 준비기간 포함)

- 소요예산 : 1,400백만원('22년)
- 산출근거 : 인건비 530백만원(15명 내외), 사무관리비 150백만원, 시설비 500백만원(인테리어 및 물품구입), 사업비 220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5. 검토 의견

### 가. 민간위탁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양천구(신정동)에 건립 중인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청소년단체에 3년간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운영
  - 위탁사무
    - ① 청소년 음악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보급, ② 청소년의 창작활동 및 관련 직업체험활동 지원, ③ 문화예술 연계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④ 대안교육과정 운영, ⑤ 시설·안전관리, ⑥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90-6 외 4필지
  - 시설규모 : 대지면적 1,936㎡, 건물연면적 5,422㎡(지하 1, 지상 6)
  - 주요시설 : 공연장, 강의실, 음악·공연·댄스 등 분야별 연습실, 합주실, 라운지, 음악 카페, 창작공간 및 사무공간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지역주민
  - 위탁기간 : 3년(2022.1.1. ~ 2024.12.31.)
  -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1,400백만원(2022년) ※ 2022.6월 개관예정, 운영 준비기간 포함.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이하 '본 센터')는 청소년의 음악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7개층(지하1층, 지상6층)의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2022년 4월 준공하여, 같은 해 6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개관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다른 민간위탁 건보다 일찍 동의를 받고자하고 있음.

## 〈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의 층별 공간배치 계획 〉

구 분	합 계(m <sup>2</sup> )	용 도
<b>합 계</b>	<b>5,422.07</b>	
지하(지하1층)	1,210.21	주차장, 기계실 등
지상	4,211.86	
1층	619.49	라운지, 음악카페, 갤러리 등
2층	659.88	합주실, 개인실기실 등
3층	851.77	공연장, 대기실 등
4층	661.31	뮤지컬/ 합창실, 무용실 등
5층	784.77	컴퓨터 음악실, 세미나실, 녹음실, 휴게실 등
6층	634.64	강의실, 사무공간 등

### ※ 건립예정지 현황

-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1290-6 외 4필지(시유지 65.4%, 구유지 34.6%)
- 면    적 : 1,935.8m<sup>2</sup>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공지
- 본 부지는 당초 장기전세주택 건립지였으나, 시민과 양천구청의 요청으로 청소년시설로 전환되어 건립되었음.

## 〈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의 위치도 〉



- 본 센터는 청소년에게 특화된 음악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보급하여 청소년의 창작활동과 관련 분야의 직업체험 등을 지원하고, 대안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청소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임.

〈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의 조감도 〉



〈 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추진경위 〉

- 2012. 3. 장기전세주택 건립 추진(행정2부시장 방침 제71호)
- 2013. 3. 청소년시설 건립요청(양천구 현장시장실)
- 2013. 4. 공공임대주택 건립반대 주민협의체 면담
- 2015. 4. 청소년시설 건립요청(양천구청장 시장면담)
- 2016. 2. 장기임대주택 건립계획 취소(임대주택과)
- 2016. 4.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검증(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2017. 1. 양천음악창작센터 건립·운영 기본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 2017. 8. 중앙투자심사(조건부:수익유치 방안마련, 소외계층 프로그램 등)
- 2017.12. 공유재산관리계획(가결),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결정
- 2018. 3. 사업실행(사전적정성 검토)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변경방침
- 2018. 3. 설계공모 의뢰, 2018.9.설계공고, 2018.12. 당선작 선정
- 2021. 3. 시립양천음악창작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청소년정책과-4310)



##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 본 센터를 운영할 단체는 음악·예술분야의 전문·특화뿐 아니라 청소년육성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필요하며, 음악창작, 음향, 음향기기와 악기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 기술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평생교육국은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음.
- 청소년 지원은 국가적 측면에서는 미래의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재능발견 또는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바, 서울시가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환경제공, 균형있는 성장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사무로 보이며, 특히, 이전에 없던 음악창작 등 예술분야의 전문적 지원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청소년의 다양성과 비정형성으로 인해 정책전달 방식의 유연성과 탄력성 등이 요구되는바,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이를 위탁하는 것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임.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 다. 민간위탁의 대상사무

-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서울시의 사무(조사·검사·검정·관리)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않고, 능률성 또는 전문지식을 요구하거나, 단순행정 관리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본 센터는 청소년에게 음악·예술 등의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려는 비권력적  
사무로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않는 사무이며, 음악·예술·창작이라는  
분야를 고려했을 때,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직영보다 운영  
전문성, 관리 효율성, 사업 활성화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다만, 평생교육국은 본 센터의 위탁사무를 청소년특화시설의 사무와 대안  
교육과정 운영을 병행하도록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대안교육과정은 사실상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특화시설로 지정된 기관이  
대안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의 위탁사무 >

- 청소년 맞춤형 음악 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보급
- 청소년의 창작 활동 및 관련 분야 직업체험활동 지원
- 문화예술 연계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연구
- 대안적 삶과 진로 탐색을 위한 대안교육과정 운영
-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의 시설 안전관리
- 그 밖에 시립양천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라. 특화시설과 대안교육의 병행

○ 평생교육국은 제298회 정례회(2020.11.02.~12.22.)에서 조례개정(「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의안번호 1998번)을 통해 신규 건립 중인 청소년시설인 본 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같은 조례 [별표1]의 특화시설로 등록하였음.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의안번호 1998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의 개정내역

### 〈 의안번호 1998번 중 별표1의 개정내역 〉

현 행					개 정				
별표 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별표 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1. 청 년 활 동 시 설	② 청소년특화시설				1. 청 년 활 동 시 설	② 청소년특화시설			
	( 생 략 )					( 생 략 )			
	〈 신 설 〉					양천구	시립양천청소년 음악창작센터	청소년 음악 창작활동 지원	신정동 1 290-6외4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청소년 관련 법령은 청소년활동시설은 수련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수련시설 중 특정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곳을 특화시설로 세분하고 있으며,

- 여성가족부령(「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은 무분별한 특화시설(특정 스포츠를 위한 특화시설, 법제처 법령해석)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화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두어, 특화시설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특정목적의 범위를 7개 분야로 한정하고 있음.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1.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발췌

5) 특성화수련활동장

가) 문화적 감성 함양 활동장

나) 과학 및 정보화능력 함양활동장

다) 봉사과 협력정신 함양활동장

라) 모험심과 개척정신 함양활동장

마) 전문적 직업능력 함양활동장

바) 국제감각 함양활동장

사) 그 밖의 특성화활동장(환경의식 함양 등 특성화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활동장)

- 본 센터는 전문적 음악 창작·교육, 직업체험은 청소년 특화시설의 범위 내에 있으나, 대안교육과정은 특화시설의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활동이 아닌 대안교육과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설치하여, 대안교육에 특화된 단체에 위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 마. 이용대상의 적정성 : 지역주민

- 민간위탁 동의에 있어 위탁사무, 기간, 이용대상, 예산 등은 중요한 요소이며, 이중 이용대상에 대해 서울시는 공공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14p 발췌)

· 공공성

- ㉠ 서비스 중요성 : 민간위탁 서비스의 공공성 정도,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 ㉡ 서비스 수혜대상 : 공급서비스의 수혜대상이 특정 목적의 한정적인 시민인지, 지역생활권의 시민인지 또는 전 시민인지 등 서비스 수혜대상 시민의 범위
- ㉢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 중단가능성, 장기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성 등
- ㉣ 서비스 중단의 과급효과 : 공공서비스 공급 중단 시 피해의 심각성, 대체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성 등

○ 평생교육국은 본 센터의 이용대상을 ‘청소년과 지역주민’으로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시설의 사용 등) ① 청소년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청소년시설 관련 조례는 이용자를 ‘청소년 또는 청소년관련 단체’와 ‘청소년이 아닌 자 또는 단체’로 구분하고 있고, 법령은 청소년(청소년단체 포함)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동의안은 이용대상을 주민 또는 시민이 아닌 ‘지역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상설정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시설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수탁 단체는 청소년 사업보다는 수익사업에 주력하여 ‘청소년 없는 청소년시설’이라는 여론이 있는바, 청소년 대상 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해당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① 법 제31조제2항 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청소년 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 등의 사용
2.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 외의 부대·편익시설 등의 사용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 ※ 지역주민의 정의

· 청소년 관련 법령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정의가 없고, 청소년과 관련이 적은 법규에는 정의가 있으나, 이 법규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수혜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적정한 적용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바. 수탁기관 (음악창작에 특화된 청소년단체)

- 본 센터는 시설형 위탁으로, 시설과 운영비용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며, 외형적 측면에서 공공서비스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본 시설을 운영할 청소년단체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본 센터는 음악·창작 관련 특화시설로, 예술분야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 단체는 많을 것이나, 법령은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단체는 활동, 복지, 보호 분야에 활동을 집중하고 있어, 음악창작 등에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단체가 적을 것으로 보여짐.
  - 이에 본 센터를 수탁할 단체가 적어 수탁대상 기관 간 경쟁없이 수탁기관이 결정될 경우 민간의 전문성, 운영의 노하우 등을 활용하지 못하는 위험성도 있는바, 평생교육국이 본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장여건 조사 등의 검토를 거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단체의 정의** (여성가족부고시(문화관광부고시) 제2005-6호), 관보 제15953호)

-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평생교육국은 적정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청소년단체가 없거나, 민간위탁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 등 청소년단체와 음악창작관련 전문기관의 협력 통해 구성된 단체도 고려하고 있음.

## 사. 사전 검토 부실

- 민간위탁 관련조례는 시장에게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시장의 검토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평생교육국에서 제출한 심의의뢰서(평생교육국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항목 중 민간의 시장여건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의 사전검토 사항이 누락되었음에도 민간위탁 평가위원회에서 ‘적정’의 결과를 받았는바,
  - 시장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가 조례에 따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와 민간위탁 평가위원회가 조례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사항을 심의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 6. (생략)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